

#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5. 12. 8.

기획재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 의 자: 달서구청장(총무과장)
- 발의일자: 2025. 11. 14.(금)
- 회부일자: 2025. 11. 14.(금)
- 상정 및 의결: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재경위원회(2025. 12. 8.)

## 2. 개정이유

- 연가일수가 적은 저연차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휴가(5일)을 부여하여 공직 이탈을 방지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휴가제도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저연차 공무원 대상 새내기 도약휴가 규정 신설(안 제14조제6항)
  - (신설)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 : 특별휴가 5일 부여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
 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9조
  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
  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」
- 비용추계서: 비해당
- 입법예고(2025. 10. 1. ~ 10. 21.) 결과: 의견 없음.

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년 이상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신설하려는 것임.
-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제6항에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5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- 최근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024년 3월 ‘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’을 발표하였으며,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.
- 현재 우리 구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해서만 재직기간별로 장기재직휴가를 차등 부여하고 있음. 본 조례 개정을 통해 1년 이상 근속하여 공직생활에 적응한 공무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복무 만족도를 높이고 조기 이탈을 방지하여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 아울러 상위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## 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## 7. 심사결과: 수정가결

#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제1호의 새내기 도약휴가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1.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: 5일
2.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: 10일
3.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: 20일
4.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: 30일
5. 제2호 및 제3호의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4조(특별휴가) ① ~ ② (생략)            ③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          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            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. 이           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           제7조제2항에 따르며, 장기재            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          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</p> <p>1.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           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            이내.</p> <p>2.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           한 공무원에 대하여 20일            이내</p> <p>3.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           에 대하여 30일 이내(단,            제1호 및 제2호의 휴가를            사용하지 않은 경우 60일            이내)</p> <p>④ ~ ⑤ (생략)            &lt;신 설&gt;</p>	<p>제14조(특별휴가) ① ~ ② (생략)           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~ ⑤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⑥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            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          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            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.           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          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.</p>	<p>제14조(특별휴가) ① ~ ② (생략)            ③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           은 제1호의 새내기 도약휴가 및           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기            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.           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          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, 운            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            이 따로 정한다.</p> <p>1.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            한 공무원: 5일</p> <p>2.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           한 공무원: 10일</p> <p>3.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           한 공무원: 20일</p> <p>4.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: 30일</p> <p>5. 제2호 및 제3호의 사용하지            않은 휴기일수는 이월하여 사용            할 수 있음</p> <p>④ ~ ⑤ (생략)            &lt;삭 제&gt;</p>